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2회 1차 정례회

검토 보고서

2023. 6. 13.(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가족행복지원과)
- 제안일 : 2023. 5. 19.
- 회부일 : 2023. 5. 25. (의안번호 : 23-92)

2. 제안이유

- 마포여성동행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료 등의 감면·할인 반환규정 등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센터 내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료 등의 감면·할인 및 반환규정 신설(안 제51조 ~ 제55조)
- 내용에 맞게 조항 재배치 (안 제56조)
- 불필요한 조항 삭제: 조례 제52조(시행규칙)

- 조문 신설에 따른 별지서식 규정
 - 〈별표 1〉 사용료 징수 범위 (제53조 관련)
 -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 (제54조 관련)
 -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제55조제2항 관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23. 4. 20~5. 10.(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마포여성동행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료 등의 감면·할인 반환규정 등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1조에서는 마포여성동행센터 내 시설 사용허가를 신설하였고
 - 안 제52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53조부터 안 제55조까지는 사용료 등의 감면·할인·반환 등을,

- 그리고 안 제53조부터 안 제55조 관련 사용료 징수범위, 사용료 등 감면,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 별지서식을 신설한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사용료 등 결정은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바, 이러한 지역특성을 살려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즉, 각종 문화센터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양성평등 인식확산 위주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2. 제1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새로운 마포 더좋은 마포

마포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경제진흥과-10779(2023. 3. 6.)호와 관련입니다.
-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 가. 심의일자: 2023. 3. 3.(금)
나. 심의방법: 대면 심의
다. 심의결과

연 번	부 서 명	안 건 명	심의 결과
1	주차관리과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상향 조정(안)	원안 의결
2	가족행복지원과	마포동행센터 사용료 등 결정(안)	원안 의결

- 붙임 1.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결과 보고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마포구청장

수신자 주차관리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경제진흥과장

협조자

시행 경제진흥과-10945 (2023.03.06.) 접수 가족행복지원과-6431 (2023.03.07.)
우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12(성산동) /http://www.mapo.go.kr
전화 02)3153-8562 /전송 02)3153-8589 / shs80@mapo.go.kr / 비공개(6)